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1.

운영위원회

###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2020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다. 회부일자: 2020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선희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혁신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구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여 영등포구의회의원이 구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에 조례 개정의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60호
----------	-------

발의년월일: 2020년 10월 일

발의자: 정선희 의원 외 4명

##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의원이 출석중지 징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출석중지 징계를 받은 경우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혁신하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출석중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 출석중지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 신설 (안 제5조제2항 신설)

## 3. 개정안 :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 : 2020. 10. 8. ~ 10. 13.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의원이 지방자치법 제88조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u></p>